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1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나경원 · 송언석 · 강대식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권영진 · 김 건 · 김기웅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김미애 · 김민전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신동욱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이성권 · 이양수 · 이인선
이종배 · 이종욱 · 이철규
이현승 · 인요한 · 임이자
임종득 · 장동혁 · 정동만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정희용 · 조정태 · 조배숙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한기호 · 한지아 의원
(107인)

제안이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대장동 사업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일반법 체계 하에서 수사·기소·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

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새로이 산정한 약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는 등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상자들이 보유하던 고액 재산에 대한 동결·보전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제 신청 및 현금화 시도가 이어져 부당취득 이익이 최종적으로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장동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정치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권력형·조직형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실명, 차명, 공범 및 제3자 명의의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동결·추징 장치와, 범죄자 외에도 범죄를 알면서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까지 법적 책임을 확장하는 광범위한 동결·몰수·추징·환수와 징벌적 책임 부과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보전·몰수·추징·환수에 관하여 예외적·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몰수·추징 환수 특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대상재산), 해외 도피 재산 등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 혼합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하거나 국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부패 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재범 유인을 제거하고 공공질서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몰수·추징의 대상자

범죄수익 및 혼합재산의 몰수·추징 대상을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 그 정(情)을 알면서 해당 재산을 취득한 제3자, 그 정(情)을 알지 못하고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취득한 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은닉·세탁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5조).

라. 대상재산의 추정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

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대상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수익을 위장
· 세탁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8조).

마. 몰수 및 추징의 집행 특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
확정 전에 범죄수익의 처분·은닉을 방지하도록 하고 보전명령은
원칙적으로 해제되지 않되, 무죄·면소 확정 등 명백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이 보전 필요성·기간·피해회복 정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
차에 따라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통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또는 혼
합재산의 보유자 등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
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대상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중
대한 경우에는 그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질적 억
제력을 갖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이 인정한 손해

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소급효 인정 및 시효정지

시행 당시 재판 중인 모든 대상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이미 시작된 사건에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장기화된 부패범죄 사건에서 환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범죄수익의 보전·회복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안 제15조 등).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사건”이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을 말한다.

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 제347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죄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죄

마. 그 밖에 대장동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2. “대상범죄”란 제1호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3. “대상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대상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피해자”란 대상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마.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바. 그 밖에 대상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다른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 및 처분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장 대상재산의 몰수 및 추징

제4조(대상재산의 몰수) ① 대상재산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대상재산이 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대상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대상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4조에 따른 몰수는 대상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면서 그 대상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대상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상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대상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情)을 알지 못하고 그 대상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③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4조 및 제1항·제2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6조(추징) ① 대상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몰수·추징의 특례) ①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대상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대상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대상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대상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대상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추정) ①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범죄행위를 한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추정은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대상재산의 보전 및 집행

제9조(보전명령) ① 검사는 대상사건에서 대상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해당하여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전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보전명령은 피의자, 피고인, 대상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추징에 충당할 재산을 소유·소지 또는 그 처분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④ 보전명령의 청구에 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⑤ 보전명령의 집행 및 효력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고, 보전명령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한다.

제10조(보전명령의 해제) ① 제9조에 따른 보전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되지 아니한다.

1. 대상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재산이 대상재산 또는 혼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대상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보전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1.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집행
2.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환부

③ 법원은 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보전명령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보전명령을 받은 자, 검사 또는 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보전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의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집행 완료 여부
 2. 피해자에 대한 환부 완료 여부 및 피해 회복의 정도
 3. 보전명령 대상재산의 성격 및 범죄수익과의 관련성
 4. 보전명령의 기간 및 그 상당성
 5. 공익적 가치 및 사회정의 실현의 필요성
 6. 보전명령을 받은 자의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 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결정을 할 때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1조(강제수사 규정의 준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대상재산, 혼합재산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따른 강제수사는 대상사건의 수사 및 대상재산 등의 추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몰수 및 추징의 집행) ① 대상재산의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이 확정된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정한 날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는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집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민사소송

제13조(대상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특례) ① 국가는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합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14조(손해액의 추정) ① 제13조에 따른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그 사안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대상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 규모
3. 대상범죄를 저지른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대상범죄의 기간·횟수 등
5. 대상범죄에 따른 벌금 및 추징액
6. 대상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상태
7. 대상범죄를 저지른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5조(시효의 정지) ① 대상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신고자의 보호) 대상사건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불이익변경금지의 특례)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

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대상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확정된 무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